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가단143951(본소), 2021가단15037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반소원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이희원, 임재홍

변 론 종 결 2022. 11. 17.

판 결 선 고 2022. 12. 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2021. 6.

20. 공사계약의 해지로 인한 계약금 12,800,000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D, E호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2019. 10. 4.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1. 6. 20. 원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되, 총공사대금을 6,4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 날 원고 계좌로 계약금 1,2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회사이다.

라. 피고는 원고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회사라는 사실을 알고 2021. 7. 9.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반소로써 기망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였다.

마. 원고는 본소로써 위 계약금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건설공사에 있어서 건설업 등록여부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취소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1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미 이행에 착수하여 기성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장래에 향하여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고 상당액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이행에 착수하여 기성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기망에 의한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